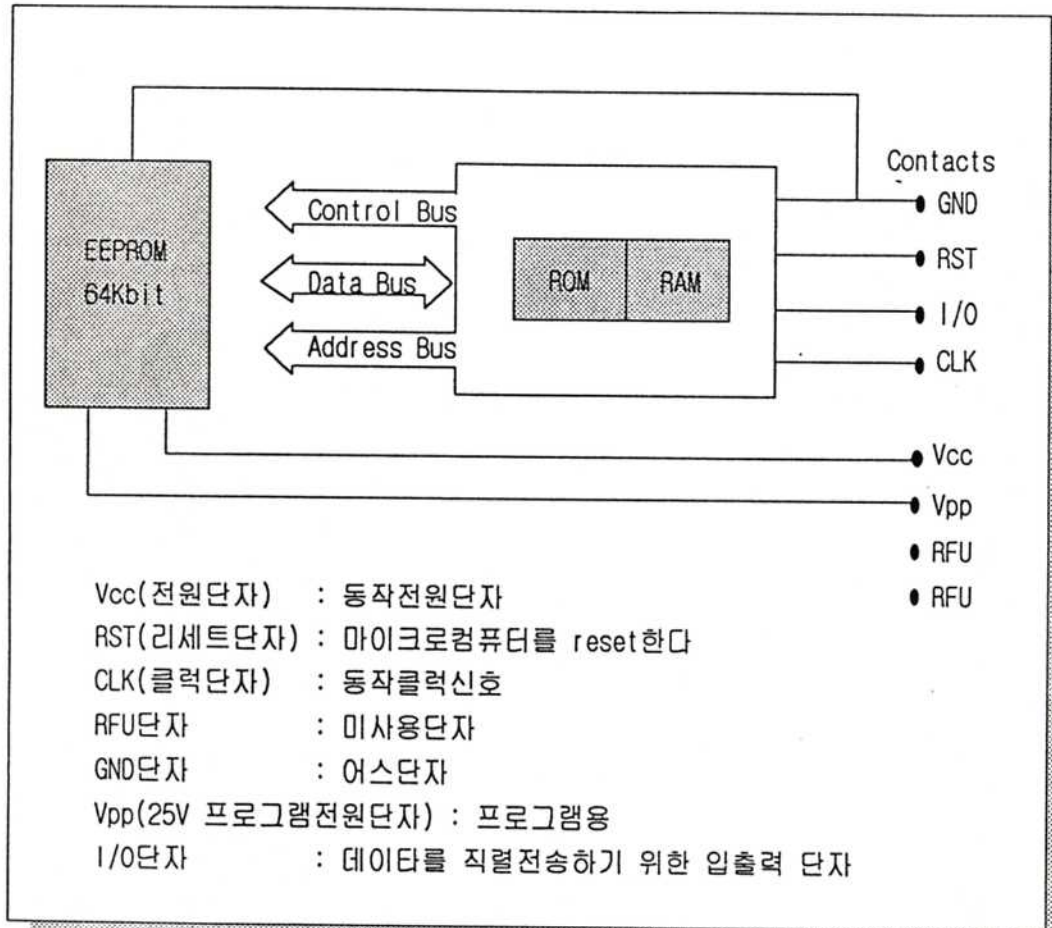


## 칩구조



구분	규격 / 용량	사용내역
CPU	8 Bit	중앙처리장치
ROM	16 Kbyte	COS, <u>Security Algorithm</u>
EEPROM	8 Kbyte	Security Area (Key), Data Area
RAM	256 Byte	System Work Area (Buffer)
I/O		R/W Interface, 내부 Interface

⑦

국회 자료실		
98 5/12	B4-1	23

96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 내무부 (1996. 10. 17. 목)

# 보도자료

## 내무부

### 1.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 국민적 동의 절차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 관련법령의 개정없이 선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 지난 3월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시스템 안전대책'을 비롯해 전체 8개분야 중 6개분야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가 아닌가?
- 전자주민카드는 임박한 정보화사회의 정보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의 시험대로 국민적 동의절차와 관련법령 개정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 2. 특별교부세 내역공개 거부는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지원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 내무부가 특별교부세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지원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 다른 통로를 통해 밝혀진 경기도의 시군구별 96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보면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여권인 시군에는 10억이상이 배정된 반면 군포, 안산 등 야권인 시군에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3. 기타 권한이양, 지방재정, 지방분권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문제, 관변단체 지원문제, 자치복권, 지방비 경찰지원 문제에 대한 질의자료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경기군포)

柳 宣 浩

연락처 : 국회의원회관 207호 T.784-5078 F.788-3207



# 1.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유선호(경기 군포,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17일 내무부 본부 국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에 대해 모두 100개항에 이르는 질의문항을 작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내무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증명서 등 7개 기능을 통합해 전자주민카드의 IC칩에 담아 전국민에게 발급하겠다는 사업으로 총 2,735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유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을 뿐만아니라, 내무부가 관련 법령의 개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미리 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주민카드가 전 국민 각자의 42개 항목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와 정치적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유의원은 정부가 급박하게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안기부와 경찰청 등 공안기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추궁하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으로 인해 중앙에 집중될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보안대책의 허술함과 국민동의의 절차 생략, 관련법령 개정미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뇌물과 연고에 약한 우리사회의 특성상 아무리 보안대책을 치밀하게 세운다해도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실제로 94년 대검찰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93년 한해동안 공공기관의 전산자료는 공무원들의 불법유출을 통해 총 292만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특정 국가기관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통제를 용이하게 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를 추궁했다.

더구나 과천시 중앙동에서 실시한 전자주민카드 발급 시범사업 이후인 지난 3월 한국전산원에서 전자주민카드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 '시스템 안전대책과 보안대책'을 비롯해 총8개분야 중 6개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전자주민카드 전산망과 중앙정보센터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었을 경우, 보안성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임박한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정보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 수준을 가늠할 시험대"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들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높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민독재의 또하나의 횡포로써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의원은 "조지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로 상징되는, 국가에 의한 개인감시 통제와 사생활침해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사업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력하게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끝>

## <전자주민카드> 질의관련 자료

###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현황>

▷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은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인감증명서 등 7개 개인증명을 하나로 통합, 전자IC카드에 관련된 42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록해 국민 개개인에게 발급하려는 사업

▷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89년 처음으로 제기된 후 정부내에서 논란을 거쳐 95년 3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6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올해 96년부터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2,357억원을 투자해 99년에 전국민에게 카드를 발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96년 478억원, 97년 624억원, 98년 1,628억원이 소요될 예정

▷ 사업추진은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적인 내용은 내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 중임.

▷ 시범사업은 95년 5월부터 과천시 중앙동 일대 24개소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주민 1,000명을 비롯해 총 5,000명에게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 96년 2월까지 시행

▷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운영 보안체계와 안전대책은 안기부와 국가보안체계연구소 합동으로 연구 중

▷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도로교통법 등 7개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정부는 내년 97년 2월 입법예고를 하고 4-5월경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함

###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의 문제점>

#### 1. 국민동의 절차 무시한 사업추진

▷ 전자주민카드는 지금까지 종이와 비닐로 만들어왔던 주민등록증과 몇 개의 증명을 합쳐서 단순히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전국민 개개인의 42개 항목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전자IC칩에 고스란히 담아 국민 개개인에게 개인비밀번호를 부여해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각자의 개인생활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잇점이 있다.

▷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 대한 기본정보가 한곳에 집중됨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증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이에 따른 감시와



통제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자기자신을 고스란히 정부의 손바닥위에 올려 놓는 격이 되고, 국민들은 약간의 편리함을 얻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정부는 전자주민카드가 전국민 개개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독단에 의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데 이 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

▷ 뒤늦게 전자주민카드의 폐해를 알게된 국민들 사이에 저항감이 형성되고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집단적인 대응이 일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밀실행정이 낳은 결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비하면 오히려 뒤늦은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 2. 관련법령 개정없는 先예산편성과 사업집행

▷ 정부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정부 사업은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후, 법 개정 후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관련법령의 개정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관련법령을 미리 개정하는 이유는 개정과정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경우, 전국민이 이해당사자인 까닭에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3.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기술적인 결함과 정보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부재문제

▷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고 전송망을 통해 전국에 설치될 단말기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안체계와 안전대책이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 내무부는 각종 보안대책을 세워 해커의 침입 등에 거의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더구나 지난 4월 전자주민카드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총 8개의 중점 검토분야 중 시스템 안전대책 등 6개의 분야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물론 이 감리가 전자주민카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전송망사업자로 선정

된 데이콤의 전자주민카드 개발사업에 국한된 것이긴 했지만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정부의 '완벽한 보안대책' 주장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또한 특히 뇌물과 연고에 약한 우리사회의 특성상 아무리 보안대책을 치밀하게 세운다해도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실제로 93년 한해동안 공공기관의 전산자료는 공무원들의 불법유출을 통해 총 292만건의 정보가 공공기관 바깥으로 유출되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한곳에 집중하게 되는 이상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의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주민카드의 보안체계 마련에 안기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대단히 높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이렇게 기술적인 결함과 내부자의 비리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미흡한 상황일 뿐만아니라 정보유출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 4.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정부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OECD가 지난 82년에 밝힌바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6개항의 원칙 가운데 여섯 번째 원칙만을 겨우 반영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 전자주민카드는 물론 행정처리에 대단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서구의 선진국들은 왜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유독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IC카드를 이용한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인가. 선진국의 경우 전자카드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와 사생활침해의 예견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들에게는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 전자주민카드의 편리성과 효율성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 전국민 지문채취를 통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이러한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화라는 선전문구를 내세워 국민들의 기본권과 정보민주화에 역행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 <전자주민카드> 관련 질의요지

1. 관련법령의 개정없이 먼저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까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내무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2.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마땅히 국민적 동의절차를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국민적 동의를 얻기위해 내무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3. 데이콤의 전자주민카드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 중점 검토분야 8개항목 중 6개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전자주민카드의 보안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우리사회의 특성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의 가능성과 그로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93년 한해 동안 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공공기관의 전산자료가 무려 292만 건에 이르고 있다. 향후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국가기관의 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었는가?
6.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인해 안기부 등 특정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과 이로 인한 개인 감시통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7. 장관은 OECD가 밝히고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여섯가지 원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이 여섯가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8.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전자주민카드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견해는?
9.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높아진다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재고할 용의는 있는가?
10. 기타 세부 항목들에 대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답변자료 검토 후 보충 질의 예정

## 2. 특별교부세 내역공개 거부는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지원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 내무부가 특별교부세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 지원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 다른 통로를 통해 밝혀진 경기도의 시군구별 96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보면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여권인 시군에는 10억이상이 배정된 반면 군포, 안산 등 야권인 시군에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공개하고, 지역간 고루 교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부기준 마련하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1/1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는 96년만해도 5000억 원을 넘는 금액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무부는 지금까지 특별교부세의 교부내역을 단 한번도 공개한 적 없이 밀실행정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정부의 모든 예산은(안기부 관련 예산은 특례법에 의해 총액만 심의 의결) 국회의 사전심의와 의결, 집행후 사후 결산을 거치도록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로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시군구별 교부내역을 즉각 제출하기 바란다.

이처럼 내무부가 위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특별교부세의 교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슨이유 때문인가. 특별교부세의 60% 정도를 내무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 교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이유는 자명하다. 본 위원과 이기문위원이 각 시도국감 과정에서 밝혀낸 일부 시도의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정한 기준없이 지역적,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지역간 편차가 극심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94년에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사업별로 마련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교부의 여지를 많이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각 지역별로 정치적 고려없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편파적인 지원시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무부는 이처럼 분란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세를 꼭 필요한 재해대책비 수준인 일반교부세의 15분의 1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역별, 사업별 공정한 교부기준을 마련한 연후에 이를 교부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즉시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내무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3. 기타 권한이양, 지방재정, 지방분권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문제, 관변단체 지원문제, 자치복권, 지방비 경찰지원 문제에 대한 질의

####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신속히 마무리하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관위임사무 처리비용은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2.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분쟁조정 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추진 철회하라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분쟁조정 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추진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 '총정원관리제도'를 '기준정원관리제도'로 개선하라

내무부의 공무원 인사관리정책인 '총정원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인사개편과 조직개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총정원관리가 아니라 기준정원만을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각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기는 '기준정원관리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 4.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원재정 확충해야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은? 중앙정부의 지원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13.27%에 불과한 교부세 비율을 2.5%이상 상향조정하고, 주세 양여율을 80%에서 100%로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5. 지방분권법 추진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무이양, 지방인력조정, 지방재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무부의 기본입장은?

#### 6. 지방세 체납과 과오납 근절을 위한 대책 세워야

지방세 체납과 과오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징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 종합토지세 과표 언제까지,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가?**

종합토지세 과표가 올해 들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과표 현실화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 주장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과 대책은?

**8. 통리반장 제도 개선하여 예산낭비 줄이랴**

통리반장 제도 개선 용의는? 관련 비용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  
을 판단, 운영토록 하는데 대한 내무부의 입장은?

**9. 자치복권 수익률 제고 대책 세우랴**

자치복권 수익액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복권사업과 관련한 내무부나  
감사원의 감사 실시여부 및 결과는? 복권사업 확대방침 재조정할 용의는?

**10. 관변단체 지원 즉각 중단해야**

관변단체 지원 중단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과 대책은?

**11. 자치단체의 불법적인 경찰관서 지원경비 근절대책은?**



① - 5

인권 자료실		
연도	구분	자료번호
'98	134-1	20

추미애 의원

### 5.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총 진행 과정

- 최초 사업구상 및 추진과정
- 예산 확보 과정
- 국회의 국정감사, 상임위, 예산특위 등 국회활동을 통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 (일자, 국회의원, 내용, 질문요지, 답변요지)
- 시민단체에 의한 문제점 제기 사례(일자, 시민단체명,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사업구상 및 추진 과정 (별첨 1)
- 예산 확보 과정 (별첨 2)
- 국회의 국정감사, 상임위, 예산특위 등 국회활동을 통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별첨 3)
- 시민단체에 의한 문제점 제기 사례 (별첨 4)

[별첨 1]

## 최초 사업구상 및 추진 과정

- '94. 2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과제로 선정
  - 주민등록증경신 및 종합전자카드화 연구요청
- '94. 10. 20 : 주민등록증 경신 준비계획 보고 (내무부)
- '95. 3. 15 : 「주민등록증경신 기본계획」 확정 (내무부)
- '95. 4. 7 : 「전자주민카드 추진협의회」 구성(15개기관 17명)
  - 내무부, 복지부, 정통부, 경찰청, 학계 등
  - ⇒ 주민등록증경신 기본계획 심의
- '95. 4. 18 : 「국무회의」 보고
- '95. 5. 12 :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 설치(6개기관 18명)
  - 내무부, 복지부, 경찰청, 의료보험, 국민연금, 전산원
- '95. 5. 17 : 전자주민카드 「시범사업계획」 확정 (정보통신부)
  - '95. 6 ~ '96. 2까지 4억 투자 추진 (데이콤 개발)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주민 및 공무원 5천명 대상 시범운영
- '95. 9. 15 : 주민등록증경신 사업비 재원확보계획 확정 (재경원)
  - 총 2,735억원 (국비 : 945, 지방비 : 893, 신용카드사 897)
- '96. 2. 29 : 전자주민카드 시연회 개최 (과천시)
- '96. 5. 7 :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계획 확정 (내무부)
- '96. 6. 11 :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국무위원)
- '96. 10. 7 : 전자주민카드 전산망사업자 계약(조달청, (주)데이콤)



[별첨 2]

## 예산 확보 과정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96	'97	'98	'99
계	2,735	478	624	300	1,328
국 비	1,842	300	360	298	879
지방비	893	178	264	2	449

※ '95년 시범사업비 5억(국비)

예산확보(국비)

○ '96년 예산 300억

- '95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 '97년 예산 360억

- '96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별첨 3]

국정감사, 상임위, 예산특위 등 국회활동을  
통해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

1. 국정감사( '96. 9. 17 ~ 18)

신한국당 김기재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 기술적·제도적 대책 2. 개인정보보호대책	○ 기술검증, '97년도 법령정비 ○ 제도·기술적 5단계 대비

신한국당 박헌기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 국민여론 수렴	○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계획

국민회의 추미애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2. 보안대책 3. 반대입장에 대한 견해	○ 국민의견 최대한 반영 추진 ○ 제도·기술적 5단계 대비 ○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국민회의 유선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 공청회 실적 등 국민동의 2. 개인감시·통제 3. 안기부의 국민감시 4. 안기부의 역할 5. 법적근거 6. 개정법령대상 및 미개정이유	○ 설문조사 및 토론회 개최 - 앞으로 공청회등 개최계획 ○ 감시·통제목적은 없음 ○ 안기부는 보안관련 자문역할 - 개인정보열람 불가 ○ 3번과 동일 ○ 주민등록법 등 5개관련법 ○ 주민등록법 등 7개관련법령 - 전산업무개발후 가능
7. 입법권, 예산심의권 침해 8. 법령개정후 사업추진 9. 추진협의회 구성 및 근거 10. 추진기획단 구성 및 근거 11. 별도 통합법 제정 견해 12. 정보수집근거 13. 외국의 미도입 이유 14. 미국, 호주 도입실패 견해 15. 사업추진 진짜 이유 16. 프라이버시권 약화 17. OECD 권고안 견해	○ '95년 국회에서 심의한 사업 ○ '97년중 법령 개정 계획 ○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민등록 증경신 기본계획 근거" ○ 9번과 동일 ○ 제도가 달라 통합이 어렵고 - 통합의 실익이 없음 ○ 주민등록법 등 5개법 ○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고 - 통합의 실익이 없음 ○ 전국민 신분증 도입을 검토 - 보류한 적이 있음 ○ 국민편의 및 행정비용절감 ○ 프라이버시권 보호 강화추진 ○ 주민등록법 등 5개법에 의거 OECD 권고안 적합

질문요지	답변요지
18. 외국단체 반대에 대한 견해	○ 주민등록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수용곤란
19. OECD 권고안 일치여부	○ 주민등록법 등 5개법에 의거 OECD 권고안 적합
20. 패스워드의 국민사용불편	○ 선택적으로 사용
21. 저능아, 무학자 보호대책	○ 국민들은 휴대만 하면 됨
22. 발급센타관리 주무기관	○ 내무부
23. 발급센타자료 공동활용 대책	○ 법에 근거 제공
24. 발급센타와 연계기관	○ 내무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찰청, 의료보험기관, 연금기관
25. 주민망의 처리용량 대책	○ 충분한 용량 감안 구축
26. 등·초본, 인감의 효용성	○ 국가 공증제도로 대안없이 폐지할 경우 사회혼란
27. 신용카드사 불참경위	○ 별도 금융전자카드 추진
28. 신용카드사 불참원인	○ 은행 단말기 교체비용 과다
29. 안기부 대공담당 역할	○ 카드 위·변조 방지 자문
30. 중앙센타의 재난대책	○ 시스템 2중구축 및 별도 자료관리시스템 설치
31. 전산망 작동불능시 대책	○ 30과 동일
32. 가짜판독기에 의한 해킹	○ 해킹 불가능
33. 발급센타의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등 5개법
34. 시범사업 문제점 대책	○ 시범사업 종료시 보완완료
35. 사업자(데이콤) 변경용의	○ 조달청에서 선정, 변경 불가
36. 발급센타 감시기구 설치용의	○ 감사원, 국정감사로 통제가능



질문요지

답변요지

- |  |   |
|--|---|
| <p>37. '89년 인권단체 건의 및 대책</p> <p>38. 개인정보 통합에 대한 견해</p> <p>39. 개인정보 열람권</p> <p>40. 지문에 대한 견해</p> <p>41. 감축 공무원 대책</p> <p>42. 수록정보 및 통제위험</p> <p>43. 전산망과의 연계시 위험</p> <p>44.. 사회단체 반대에 대한 견해</p> <p>45. 시민단체 공청회 참석요청</p> <p>46. 등·초본, 인감폐지 용의</p> <p>47. 발급센타 전자서명 도입용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처벌규정 제정함</li> <li>○ 일제발급시까지만 유지</li> <li>○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열람·수정 가능</li> <li>○ 간첩, 범죄자,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 불가피</li> <li>○ 주민복지업무 등에 이용</li> <li>○ 사생활침해 및 통제목적은 전혀 없음</li> <li>○ 일반 공증전산망과는 연계하지 않음</li> <li>○ 사회단체와 계속 토론, 협의 추진</li> <li>○ 11. 2 토론회에 참석</li> <li>○ 국가공증제도로 대안없이 폐지는 곤란</li> <li>○ 모든 정보처리·열람자의 인적사항은 기록 보관</li> </ul> |
|--|---|

2. 예결특위( '96. 11. 1 ~ 6)

신한국당 이국헌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 사생활보호대책 및 악용대책 2. 국민여론 수렴없이 추진	○ 제도·기술적 5단계 대비 ○ 10. 30, 11. 2 토론회 개최

국민회의 김충조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 DB구축 및 운영상 애로사항	○ 문제점 사전 검토·보완

국민회의 유선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1. 개인정보의 관리담당 부처, 관리방식, 안전대책 2. 컴퓨터 운영 안전대책 3. 개인별 비밀번호 안전대책 4. 정보전송시 암호화 여부 5. 주민카드 사업 유보 6. 법령개정 이후로 유보	○ 내무부에서 관리하며 각종 보안대책 수립추진 ○ 중앙컴퓨터 등이 확정되면 설계·구축예정 ○ 추진기획단에서 검토중 ○ 압축된 데이터로 정보를 전송 ○ 안전장치 마련, 제도정비 등 신중히 추진 ○ '97년중 법령 개정



[별첨 4]

## 시민단체에 의한 문제점 제기 사례

○ 시민단체명 : 공동대책위

(청년정보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화 가족실천협의회, 과천시민의 모임, 지식인 연대, 정보 연대, 노동 정보사업단,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전교조, 여성단체연합, 민족회의)

○ 일 자 : 1996. 10. 30, 1996. 11. 2

○ 내 용

### 1. 전자주민카드 도입취지

전자주민카드사업은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13년이 지남에 따라 경신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기본인적사항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든 증명서에서 동일하고 다만, 각종 증명의 기능을 정의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만 다른데도 별도의 증명발급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은 여러곳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과 행정경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증명이나 카드가 전자카드화하는 추세이므로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경신하되 국민편익과

비용절감을 위해 기본 인적사항이 동일한 여러기능을 종합하여 하나의 카드로 제작·보급하자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 2. 프라이버시 보호권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권고안에 따르면 ① 개인정보 화일에는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되며 ②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③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④ 정보주체는 정보공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⑤ 정보수집 이전에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⑥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여섯번째 항만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첫째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현재 주민들이 휴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의 내용과 주민등록등·초본사항, 등록인감, 국민연금 가입상황 등 국민들이 신고하였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이 모르는 비밀정보는 전혀 입력되지 않는다.



둘째 수집되는 정보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의 제도운영과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데 사용되고

셋째 주민등록사항이나 운전면허, 의료보험 정보는 모두 국민 스스로가 전입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의료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동의한 사항이다.

넷째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정보는 정보주체가 정보의 제공권한을 갖게 되어 있으며

다섯째 각 개별 정보의 수집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인감증명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모든 정보는 정보주체에 의해 언제라도 열람 수정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전자주민카드사업이 OECD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권고하고 있는 6가지 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 3. 정보의 집중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는 센터에는 국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가 집중된다고 하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산센터의 정보는 20만매이상을 발급하는 초기 발급 시에는 정보를 집중하게 되나, 일제발급이 완료되면 점차 각각의 전산망으로 분산하게 된다. 다만, 신규 17세자나 재발급시에는 해당 전산망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발급하게 된다.

#### 4. 전산망 연계목적 및 기능

주민망에 연계되는 외부 전산망은 경찰청의 운전면허 전산망, 의료보험전산망, 국민연금전산망 3곳 뿐이며, 이는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자격관련 사항의 변동사항을 수신받기 위한 목적으로 연계된다. 이 목적외에 전산센터에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전산망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전산망을 통한 전산센터의 자료열람이나 시스템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전산망이 연계되므로 병원진료내역, 교통법규 위반사항, 직업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각각의 전산망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제도적으로도 불법인 관계로 사실이 아니다.

또한 안기부 등에서 자료를 열람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으나 현재도 안기부는 주민등록전산망의 자료를 전혀 열람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접근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 5. 안기부의 역할

안기부가 추진기획단에 참여함으로써 전산센터 등을 관리 감시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으나 안기부는 보안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여러가지 보안대책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부문에 대한 자문역할만 할 뿐으로, 보안시스템을 개발 하지도 않고 전산센터를 관리·감독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 6. 발급센터의 관리

발급센터는 내무부 주관하에 운영되며, 각각의 전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 의료보험기관, 국민연금기관의 직원이 파견되어 운영되고, 카드발급을 위해 조폐공사 기술진이 상주 근무하게 된다.

## 7. 감시·통제의 우려

전산센터의 자료는 카드 발급을 위한 것으로 감시·통제 목적의 정보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감시·통제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제공할 수도 없다. 전산센터의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의거 정보제공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 8. 사생활 · 인권 침해

전산센터와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주민등록 사항과 각종증명의 자격사항으로 사생활을 심하게 침해하는 사항은 없으나 카드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하고 전산센터의 경우 기술적·제도적으로 완벽한 보안장치를하여 정보유출의 위험을 방지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9.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전산망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담당자에게는 보안카드를 제공하여 허가된 자에 한해 시스템 접근을 허용할 계획이며, 모든 정보처리내역과 처리담당자의 인적 사항, 처리시간 등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기록하여 매일 자료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관하게 되며, 만약 관계자가 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법령개정시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10. 보안대책

전자주민카드의 보안대책은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의 정보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안부문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분실카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별 비밀 번호와 전산센터에 분실카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둘째 카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겉면에 화폐수준의 비표 처리를 하여 사진 등의 변조를 막고, 전자카드내에는 보안키와 암호화장치를 하여 정보내용의 위·변조를 차단할 계획이다.

셋째 전산센터는 주요시설로 관리 운영하고 통신망은 별도의 전용망으로 구축하여 해커 침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전산센터의 각 장치별로 방화벽을 설치하여 센터의 정보를 보호할 것이며

넷째 공직자 등 취급자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업무별로 시스템과 자료를 분리 구축하고 정보처리·열람의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11. 컴퓨터 장애

전산센터의 주전산기는 2중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보가 손실될 것을 대비하여 자료를 별도 보관 관리할 계획이다.

## 12. 해킹의 위험

발급센터의 통신망은 현재의 주민망을 사용할 계획이며, 주민망은 내무부와 시·도청에 교환기를 설치한 별도의 전용망으로 구성되어 공중통신망과는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산망보다는 해킹의 위험이 없다 하겠다.

또한 방화벽 설치 등 H/W나 S/W적으로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13.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

발급센터에 수록되는 정보는 전자주민카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시스템 운영요원에 국한되며, 또한 정보의 열람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 14. 개인별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별도의 개인별 고유번호를 입력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필요성도 없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기록이 어디엔가 기록되고 보존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 15. 지문수록

지문은 대형사고 등에서 보다 과학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16. 국민동의절차 무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여러가지 증명을 하나로 통합하는 관계로 각각의 제도에 대해 발급부터 운영절차 전반의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이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17. 법적근거 및 법령정비계획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의 경신과 증의 서식, 발급절차 등을 새로이 정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에 의거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의 서식·규격 등도 새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절차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전산서식과 운영절차에 대한 전산업무의 개발이 선행된 후 법령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97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월 자료실		
등호		
'98	B4-1	21
5/12		

□ '96예산 집행내역

○ 예산과목 : 주민등록 경신 사업비 300억원

○ 집행내역

- 발급센타 장비 구입비 : 224억원
- 발급센타 시설 공사비 : 2억원
- 소프트 웨어 개발비 : 71억원
- 연구 용역비 : 3억원

□ '97예산

○ 예산과목 : 주민등록증 경신 사업비 360억원

○ 예산내역

- 전자카드 구입비 : 285억원
- 카드판독기 구입비 : 56억원
- 통신 회선료 : 11억원
- 기타 용역비 : 8억원

□ 사업분야 명세서

사업분야	기 준	일 정
카드 제조	- 주민카드는 국가의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담당	
카드발급기 제조	- 시간당 발급능력과 국가신분증으로서 최고의 품질관리 및 생산이 가능한 기기 -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효과적으로 할수있는 장비	'97. 7월말 도입예정 (조폐공사)
칩 제조	- 국가신분증에 사용되므로 안정성 및 내구성등이 양호한 제품 - 국내 반도체 업체의 생산품중 주민카드 운영에 적합한 제품	'97 하반기 구매 예정
카드판독기	- 안정성 및 내구성등이 양호한 제품 - 행정전산망용 PC에 부착 사용할 수 있는 장비 - 주민카드 운영에 적합한 제품	'97 하반기 구매 예정
휴대용면허확인기	- 경찰관이 휴대 간편한 제품 - 주민카드운영에 적합한제품 - 수배자등 범법자는 검색 가능하도록 제작된 제품	'97 하반기 구매 예정
중앙전산기	- 범용개방형 운영체제 및 유지보수 등이 용이한 제품 - 대량자료의 온라인 및 일괄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97. 2 ~ 4월 설치 예정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일정

분 야	사 업 자	기 준	일 정
카드제조·발급	한국조폐공사	- 제3차 추진협의회 에서 결정	'96. 5.13
전산망 사업자	(주) 데이콤	-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	'97.10. 7
읍면동 주전산기 및 화상 단말기	삼성전자	-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	'96.12.20
화상·입력기	기아정보	-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	'97.12.20
주민카드처리 시스템	삼전산업(주)	-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	'96.12.30

## 추 미애 의원

### 1. 전자주민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 시범사업 계획 및 현황
- 전자주민카드 추진현황
- 각 부분별 추진 주체 및 공조 현황
- 전자주민카드 기술별, 부품별 수급계약 현황, 방법
- 공무원에 의한 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 및 대처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범사업 계획 및 현황(별첨 1)
- 전자주민카드 추진현황(별첨 2)
- 각 부분별 추진 주체 및 공조 현황(별첨 3)
- 전자주민카드 기술별, 부품별 수급계약 현황, 방법(별첨 3)
- 공무원에 의한 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내무부의 입장 및 대처방안(별첨 4). 끝.



⑤

住民카드事業  
濟州道 示範運營計劃

'97. 2

內 務 部

## 《 그동안 推進經緯 》

- '94. 2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과제로 선정
- '95. 3. 15 : 「주민등록증경신 기본계획」 수립
- '95. 4. 7 : 「주민카드추진협의회」 구성(15개기관17명)
- '95. 4. 18 : 「국무회의」 보고
- '95. 5. 12 : 「주민카드추진기획단」 설치(9개기관 20명)
- '95.6-'96.2 : 전자주민카드 시범사업 추진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주민등 5천명대상
- '95. 9-12 : 전자주민카드 총 사업비 규모 확정(총 2,735억원)
- '96.6 - 9 :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확정
- '96. 10. 7 : 전산망사업자 계약(데이콤, 사업기간 : '96.10~ '99.9)
- '96. 10.30 :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96. 11.23 : 제도개선 자문기구 및 실무반 설치(변호사, 교수 등)



## ① 住民카드事業概要

### ○ 推進背景

- '83경신후 13년경과로 위조 방지를 위한 일제경신 시급
- 단순 신분증에서 다목적 증명으로 확대, 국민편의 도모
- 경제수준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신분증 도입

### ○ 推進計劃

- 사업은 4개년('96 ~ '99) 계획으로 총 2,735억원 투자
  - '96년 : 주민카드사업 추진 준비
  - '97년 : 제도정비 및 주민카드 발급센터 구축
  - '98년 : 제주도 실시 및 주민카드발급 착수
  - '99년 : 전국민 실용화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확보
  -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추진협의회 및 기획단 설치
  - 사업추진은 전문기관이 전담추진  
(전산망사업 - 데이콤, 카드발급 - 조폐공사)

### ○ 期待效果

- 연간 1억7천만통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감축
  - 기본 인적사항이 동일한 여러 증명을 통합 경비절감
-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한 범죄 예방으로 사회분위기 쇄신
  - 여권변조, 재산탈취, 신분위장, 미성년자 불법고용 등 방지
-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국내정보산업 육성

## ② 카드名稱 및 模型

### ○ 카드 名稱

- 한국전산원 주관 공모 심사결과 『주민카드』로 선정
  - 심사위원 : 서종택(고려대 국문과 교수), 정진규(시인),  
내무부, 한국전산원, 데이콤 등

### ○ 內部 收錄項目

- 설명회 등을 개최 국민의견을 수렴  
⇒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는 항목 등은 조정

### ○ 카드 模型

#### · 인쇄항목

- 카드 앞면에는 명칭과 사진 및 기본사항만 인쇄 수록
  - 카드명칭,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장 등
- 카드 뒷면에는 운전면허의 기본사항과 의료보험의 유의사항 등을 수록

#### · 사진크기 확대

- 카드 분실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크기 확대  
· 증명 ⇒ 반명함(24mm × 28mm ⇒ 30mm × 35mm)

#### · 카드 문양 및 구도

-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과 무궁화 등을 형상화하여
- 우리나라의 발전과 통일을 염원하고 21세기를 지향할 수 있는 문양으로 제작



### ③ 制度改善 推進

#### ○ 改正方向

- 법의 명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 등 개정
  -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도로교통법, 의료보호법, 국민연금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의료보험법, 공무원의료보험법의 시행규칙 개정

#### ○ 推進事項

- 법률 전문가와 관계기관 제도개선 담당자 합동으로 제도개선 자문기구 설치
  - 개정법률(안) 검토 및 자문
- 주요 개정내용
  - 주민카드 발급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카드 불법사용방지에 관한 사항 등

#### ○ 推進計劃

- 법 개정 : '97. 5월 임시국회
  - 법률안 입안 : '97. 2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97. 3월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제출 : '97. 4월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97. 12월말

#### 4 濟州道부터 實施한 後 全國擴散

##### ○ 推進方針

-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용화 운영 추진
  - 기술적 문제점 및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 도출·보완
  - 제주도 운영상황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

##### ○ 推進計劃

- 제주도 추진기획단 설치 : '97. 3
  - 내무부, 추진기획단, 제주도 합동으로 구성·운영
- 운영환경 조사·정비 및 운영망 구축 : '97. 3 ~ 12
  - 행정기관, 병원, 은행 등 환경조사·정비 : '97. 3 ~ 6
  - 카드판독기 및 관련 S/W 설치 : '97. 7 ~ 12
- 화상입력 및 카드 발급 : '98. 1 ~ '98. 3
  - 주민홍보 및 사진, 인감, 지문 입력 : '98. 1 ~ 3
  - 카드 제조 및 발급 : '98. 1 ~ 3
- 운영 및 문제점 도출·보완 : '98. 4 ~ 9



## 5 事業 推進日程 調整

### ○ 調整背景

- '98년에 6개월 정도 제주도부터 실시한 후 전국 확산

### ○ 調整計劃

	당 초	조 정	
· 제 주 도 :	-	⇒ '98. 1 ~ 9('98. 4 실제운영)	
· 사진입력 :	'97. 5 ~ 8	⇒ '98. 1 ~ 9(전국 '98. 4 ~ 9)	
· 전국발급 :	'98. 1 ~ 9	⇒ '98. 10 ~ '99. 6	
· 실 용 화 :	'99. 1 ~	⇒ '99. 10 ~	

#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현황

## Ⅰ 사업개요

### ○ 전자주민카드 추진배경

- '83년이후 14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경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감축 및 대국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 계기 마련

### ○ 사업은 3개년('96 ~ '98) 계획으로 추진

- '96년 : 전자주민카드발급센터 구축 및 S/W 개발
- '97년 : 종합자료망 구축 및 제도정비
- '98년 :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시험운영  
⇒ '99년부터 실용화

### ○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등 총 2,735억원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계	2,735	1,837	898
'95년	5	5	-
'96년	478	300	178
'97년	624	360	264
'98년(잠정)	1,628	1,172	456



## 2] 추진현황

### ○ 추진체계 확보

- '95. 5월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으로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 9개기관 20명(내무부, 복지부, 경찰청, 전산원 등)
  - 사업자관리, 제도개선 등 사업추진 총괄
- 카드제조 및 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
- '96. 10. 7 전산망사업자로 (주)데이콤이 선정됨(조달청)
- 기타 IC 및 장비 제조업체는 인증을 통해 결정

### ○ 사업 추진실적

- 한국전산원에서 시범사업을 토대로 전자주민카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96. 3월~8월)
- 전자카드에 사용할 IC 표준규격 제정 및 공고('96. 9월)
- 읍면동 화상입력 장비 적합시험 완료('96. 10월)
- 발급센터 및 전자카드 운영용 S/W 개발착수('96. 10월)
- 전자주민카드발급센터 구축 착수
  - 조폐공사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건물 신축중(약 1,500평)
  - 전산망 장비 조달구매 의뢰('96. 11월)
  - 발급센터 주전산기 도입 착수('97. 2월)

### ○ 제도정비 및 국민의견 수렴

- 증명의 통합운영에 따른 증명서식, 운영절차 등 제도개선 착수
  - 주민등록법등 7개 법령 개정대상으로 추진
  - ※ 관련법률은 '97년 5월예정 임시국회중 개정안건 상정, 시행령·시행규칙은 '97년말까지 개정
- 국민동의 및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지난 10.30(내무부 주관), 11.2(시민단체 주관) 합동토론회 개최

### ③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방지 및 사회분위기 쇄신
  - 여권변조, 신분위장, 미성년자 불법고용 등 방지
- 연간 1억 7천만통에 이르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감축
  - 국민들의 읍·면·동 방문시간 및 경비 절감
  - 행정기관의 증명 발급 인력 및 비용절감으로 작은정부 구현
    - ※ 제증명 발급이 읍·면·동사무소 업무량의 30% 차지
- 국민복지행정 지원 및 운전면허 관리 과학화
  - 현재 세대별로 지급되는 의료보험증을 개인별로 지급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개선
  - 국민연금가입상황을 개인이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전면허 위·변조 방지 및 면허확인·스티커발급 자동화
- 각종 민원처리 업무의 간소화 및 정보화사회 대비
  - 전출/입, 증명발급신청 등 각종 신고·신청처리의 자동화
  -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 각종 민원처리 및 정보열람 신속처리
  - 전자신분증의 사용을 통한 대국민 정보마인드 확산계기 마련



전자주민카드 추진주체 및 계약 현황, 방법

부 분 별	사 업 자	계 약 방 법	비 고
카드제조·발급	한국조폐공사	- 제3차 추진협의회 에서 결정	'96. 5.13
건산망 사업자	(주) 데이콤	-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	'96.10. 7
1면동 주전산기 및 화상 단말기	삼성전자	-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	'96.12.20
화상 입력기	기아정보	-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	'96.12.20
주민카드처리 시스템	삼전산업(주)	-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	'96.12.30

#### ④ 정보 불법유출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 주민등록법 17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3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⑤ 사생활침해 및 감시·통제

- 병원 진료사항, 교통법규 위반사항, 직업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재산관련 항목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 국민 감시·통제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
- 안기부는 보안관련 전문가로 카드 위조, 변조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

※ 주민카드 사업은 각계 전문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자문을 구하고 있음

#### ⑥ 정보집중에 의한 피해 방지대책

- 초기 카드 발급시에 발급에 필요한 자료만 관리하고 일제경신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정보를 분산 관리.
- 구축된 정보는 기술적·제도적으로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
- 제3자나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 주민카드 정보보호대책

## ① 분실카드 타인사용 방지대책

- 카드별로 개인의 비밀번호 수록
- 카드 겉면에 비표처리를하여 위조, 변조 방지
- 본인 식별이 용이하도록 사진크기 확대

## ② 전산망 정보보호대책

- 센타는 주요시설로 관리하여 외부 침입 방지
- 통신망은 별도의 전용망(폐쇄망)으로 구축
- 센타에는 방화벽(해커침입 방지장치) 설치

## ③ 내부자 정보유출 방지대책

- 모든 시스템 운영자에게는 보안카드를 지급
- 모든 정보처리내역과 정보처리·열람 담당자의
- 인적사항 및 처리시간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 기록 보관  
⇒ 정보 유출자는 즉시 노출됨